

통계학과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대체 제도 운영 내규

2021. 12. 00. 제정

제1조(목적) 이 내규는 본교 「대학원학칙 일반대학원 시행세칙」 제65조에 따라 통계학과 (이하 '본과'라 함) 일반대학원 (이하 '대학원'라 함) 석사학위논문 대체 제도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내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대체 제도 : 석사과정 학생이 석사학위논문의 제출과 상응하는 별도의 방법으로 학위를 취득하는 행위
2. 대체 실적물 : 대체 제도의 적용을 받는 학생이 석사학위논문 대체를 위해 제출하는 실적물
3. 추가 수수료요건 : 대체 제도의 적용을 받는 학생이 수료를 위해 추가적으로 충족하여야 하는 요건

제3조(적용대상) 대체 제도 시행 학기에 본과 대학원에 재적 중인 학생 (수료생 미포함)

제4조(신청 및 취소) ① 대체 제도를 신청하려는 학생은 잔여학기가 2학기 이상이어야 하며, 대학원에서 정한 기간에 신청하여야 한다. ② 대체 제도의 신청은 학생별 1회에 한하며,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③ 대체 제도의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, 해당 학기에는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없다.

제5조(대체 실적물) ① 대체 실적물은 자기주도 프로젝트의 결과보고서로 한다. 이때 대체 실적물로 인정되는 결과보고서는 데이터 분석의 내용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. ② 대체 제도의 적용을 받는 학생은 대학원에서 정한 기간에 대체 실적물을 제출하여야 한다. ③ 대체 실적물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「대학원학칙 일반대학원 시행세칙」 제43조 및 제45조의 학위논문제출자격을 갖추어야 한다.

제6조(심사위원회) ① 대체 실적물의 심사를 위해 학과에 「대체실적물심사위원회」 (이하 "심사위원회"라 함)를 두며, 지도교수를 심사위원장으로 하여 총 3인으로 구성한다. ② 심사위원은 지도교수가 추천하고 학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과 학과장이 위촉한다. ③ 지도교수는 1인 이내의 박사학위를 소지한 외부교수 또는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.

제7조(추가 수수료요건) ① 대체 제도를 적용을 받는 학생은 자기주도 프로젝트와 관련된 3학점을 추가 이수해야 한다.

제8조(기타) 이 내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「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대체 제도 운영내규」에 따른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내규는 2022년 3월 1일자로 시행한다.

석사학위논문 대체 제도 시행(안)

대학원 통계학과

1. 개요

시행 학과	통계학과	시행 전공	수리통계/응용통계
시행 학기	2022학년도 1학기	적용대상	석사과정생
대체 실적물	자기 주도 프로젝트의 결과보고서		
추가 수료요건	3학점 추가 이수		

2. 대체 실적물 및 추가 수료 요건 상세

대체 실적물(필수):

대체 실적물은 자기 주도 프로젝트의 결과보고서로 한다. 이때 대체 실적물로 인정되는 결과보고서는 데이터 분석의 내용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.

추가 수료 요건(시행 시):

대체 제도의 적용을 받는 학생은 3학점을 추가 이수해야 한다.

3. 대체 실적물 심사 기준 및 절차

심사기준 :

1. 통계적 자료분석의 학술적 연구가치
2. 자료분석의 타당성 및 논리적 우수성

심사 절차 :

「대체실적물심사위원회」의 각 심사위원은 대체 실적물에 대해 위의 심사 기준에 따라 A/B/C로 평가하며 지도교수는 심사위원의 평가에 따라 심사요지를 작성하고 합격 여부를 결정한다.

4. 대체제도 시행사유 및 기대효과 : 별지

202. 12.

대학원 통계학과 주임: 정 환

정경대학장: 이 종 화

